

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1월 30일

고흥군의회 의장 

고흥군의회 훈령 제2023-11호

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

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제8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훈령 제2023- 11 호

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

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제8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불수리 사항)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<u>제8조</u>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이외의 사항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불수리 사항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제10조</u> 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